



## 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2016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

1. 『도로법 시행령』 제56조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』 제5조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에 대하여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 조정하고자

2. 2016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문을 구보, 구정게시판 및 인터넷에 게시(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)하고 『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 규칙』 제4조 및 『도로법 시행령』 제56조 제7항에 따라 5개년('16년~'20년) 도로굴착사업계획을 **2016.01.22(금)**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에 알려 도로굴착·복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### 가. 제출서류

- 도로굴착사업계획서(단위사업별 작성)
  - 설계도면(전자도면으로 한정함)
  - 교통소통대책
  - 먼지발생방지대책
  - 안전사고방지대책
  - 도로시설유지대책
  -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(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-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(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  - ※ 첨부서류(단위사업별이 아닌 총괄작성 가능)
- 도로굴착장기사업계획서('16~'20년)

### 나. 제출요령

- 도로관할 구청별로 작성(2개 이상 구에 걸쳐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과 사업시행기간 등을 협의하여 신청)
- 도로폭 20m이상 도로와 20m미만 도로로 구분하여 작성

- 굴착부분이 길이 10m이하, 너비 3m이하의 소규모 굴착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**※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활용 등록**

다. 작성요령

- 사업계획은 실현 가능한 도로굴착사업만을 작성 신청
-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(보도는 2년 이내)로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구청에 미리 확인하여 작성
- 굴착구간의 시.종점 및 매설물의 관경을 정확히 표기하고, 굴착부위는 보도구간을 우선으로 하여 계획할 것.
- 위치도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되도록 일련번호 부여 작성
- 주요매설물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대책, 교통소통대책은 상세하게 작성 제출

※ 특히,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 대형사업 허가(승인) 부서에서는 위 기간 내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도로관리심의회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.

- 붙임 1. 공고문(안) 1부  
 2.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양식 1부.  
 3. 장기굴착사업계획서('16~'20년) 제출양식 1부. 끝.

주무관	<b>정재두</b>	도로굴착팀장	代정재두	도로시설과장	<b>이동훈</b>	안전건설국장	전결 12/21 <b>백기운</b>
협조자	주무관	<b>이수정</b>	의회법제팀장	<b>이창하</b>			